

신장유 일동미라주 더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0.31**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2.2.27)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 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안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당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의거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 공고문에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분양홈페이지(<http://www.신장유일동미라주.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분양관련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단, 분양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만 참고하여 청약할 경우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803호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공고일 2014.10.31 일보 공고)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산 139-1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6,762.7㎡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0층 11개동 7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분 244세대(일반 특별공급 : 7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7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7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9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저층 우선 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일반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 영 주 택		59.9365	59.9365	20.0648	80.0013	27.3728	107.3741	34.3182	159	15	15	15	4	49	110	101동1~2라인,102동1~2라인,103동1~2라인,104동1~2라인,105동1~2라인	10	2017년 7월예정
		74.9314A	74.9314	24.5942	99.5256	34.2209	133.7465	42.9039	166	16	16	16	4	52	114	102동3라인5라인,103동3라인5라인,104동3라인5라인,105동4라인,106동1~2라인	9	
		74.9912B	74.9912	25.6798	100.6710	34.2483	134.9193	42.9382	73	7	7	7	2	23	50	102동4라인,103동4라인,104동4라인,105동3라인	4	
		74.9577C	74.9577	24.2294	99.1871	34.2329	133.4200	42.9190	57	5	5	5	1	16	41	108동1라인,109동1라인,110동1라인	3	
		84.9370A	84.9370	27.3599	112.2969	38.7903	151.0872	48.6328	231	23	23	23	6	75	156	107동1~2라인4라인,108동3~4라인,109동3~4라인,110동3~4라인,111동1~2라인4라인	12	
		84.9412B	84.9412	27.9756	112.9168	38.7924	151.7092	48.6353	96	9	9	9	2	29	67	107동3라인,108동2라인,109동2라인,110동2라인,111동3라인	5	
	계								782	75	75	75	19	244	538		4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주택형(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동별(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 도 금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10%)	6회차(10%)		
									계약시	2014.12.20	2015.03.20	2015.07.20	2015.12.20	2016.05.20	2016.10.20	2017.02.20		입주지정일
59.9365	59	101동1,2호, 102동1,2호, 103동1,2호, 104동1,2호, 105동1,2호	4	1층	4	48,291,343	129,708,657	178,000,000	10,000,000	7,8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17,800,000	53,400,000	
			10	2층	10	48,291,343	137,608,657	185,900,000	10,000,000	8,590,000	18,590,000	18,590,000	18,590,000	18,590,000	18,590,000	18,590,000	55,770,000	
			20	3~4층	20	48,291,343	143,508,657	191,800,000	10,000,000	9,180,000	19,180,000	19,180,000	19,180,000	19,180,000	19,180,000	19,180,000	57,540,000	
			125	5층~20층	125	48,291,343	149,508,657	197,800,000	10,000,000	9,780,000	19,780,000	19,780,000	19,780,000	19,780,000	19,780,000	19,780,000	59,340,000	
74.9314A	74A	102동3호, 103동3호, 104동3호	3	2층	3	60,372,860	164,027,140	224,400,000	10,000,000	12,440,000	22,440,000	22,440,000	22,440,000	22,440,000	22,440,000	22,440,000	67,320,000	
			6	3~4층	6	60,372,860	171,227,140	231,600,000	10,000,000	13,160,000	23,160,000	23,160,000	23,160,000	23,160,000	23,160,000	23,160,000	69,480,000	
			48	5층~20층	48	60,372,860	178,427,140	238,800,000	10,000,000	1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71,640,000	
		102동5호, 103동5호, 104동5호, 105동5호, 106동1,2호	1	1층	1	60,372,860	157,827,140	218,200,000	10,000,000	11,820,000	21,820,000	21,820,000	21,820,000	21,820,000	21,820,000	21,820,000	21,820,000	65,460,000
			6	2층	6	60,372,860	167,527,140	227,900,000	10,000,000	12,790,000	22,790,000	22,790,000	22,790,000	22,790,000	22,790,000	22,790,000	68,370,000	
			12	3~4층	12	60,372,860	174,827,140	235,200,000	10,000,000	1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70,560,000	
			90	5층~20층	90	60,372,860	182,027,140	242,400,000	10,000,000	1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24,240,000	72,720,000	
			74.9912B	74B	102동4호, 103동4호, 104동4호, 105동3호	1	1층	1	60,421,041	157,778,959	218,200,000	10,000,000	11,820,000	21,820,000	21,820,000	21,820,000	21,820,000	21,820,000
1	2층	1	60,421,041	167,378,959	227,800,000	10,000,000	12,780,000	22,780,000	22,780,000	22,780,000	22,780,000	22,780,000	22,780,000	68,340,000				
8	3~4층	8	60,421,041	174,778,959	235,200,000	10,000,000	1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23,520,000	70,560,000				
63	5층~20층	63	60,421,041	182,078,959	242,500,000	10,000,000	14,250,000	24,250,000	24,250,000	24,250,000	24,250,000	24,250,000	24,250,000	24,250,000	72,750,000			
74.9577C	74C	108동1호, 109동1호, 110동1호	3	1층	3	60,394,050	158,605,950	219,000,000	10,000,000	1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65,700,000	
			3	2층	3	60,394,050	168,305,950	228,700,000	10,000,000	12,870,000	22,870,000	22,870,000	22,870,000	22,870,000	22,870,000	22,870,000	68,610,000	
			6	3~4층	6	60,394,050	175,605,950	236,000,000	10,000,000	1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70,800,000	
			45	5층~19층	45	60,394,050	182,905,950	243,300,000	10,000,000	14,330,000	24,330,000	24,330,000	24,330,000	24,330,000	24,330,000	24,330,000	72,990,000	
84.9370A	84A	107동1,2호, 111동1,2호	4	1층	4	68,434,456	170,665,544	239,100,000	10,000,000	13,910,000	23,910,000	23,910,000	23,910,000	23,910,000	23,910,000	23,910,000	71,730,000	
			4	2층	4	68,434,456	181,265,544	249,700,000	10,000,000	14,970,000	24,970,000	24,970,000	24,970,000	24,970,000	24,970,000	24,970,000	74,910,000	
			8	3~4층	8	68,434,456	189,265,544	257,700,000	10,000,000	15,770,000	25,770,000	25,770,000	25,770,000	25,770,000	25,770,000	25,770,000	77,310,000	
			62	5층~20층	62	68,434,456	197,265,544	265,700,000	10,000,000	1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26,570,000	79,710,000	
		107동4호, 108동3,4호, 109동3,4호, 110동3,4호, 111동4호	8	1층	8	68,434,456	174,365,544	242,800,000	10,000,000	1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72,840,000
			8	2층	8	68,434,456	185,165,544	253,600,000	10,000,000	1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76,080,000
			16	3~4층	16	68,434,456	193,265,544	261,700,000	10,000,000	16,170,000	26,170,000	26,170,000	26,170,000	26,170,000	26,170,000	26,170,000	78,510,000	
			121	5층~20층	121	68,434,456	201,365,544	269,800,000	10,000,000	1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80,940,000
84.9412B	84B	107동3호, 108동2호, 109동2호, 110동2호, 111동3호	5	1층	5	68,437,840	174,362,160	242,800,000	10,000,000	1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24,280,000	72,840,000	
			5	2층	5	68,437,840	185,162,160	253,600,000	10,000,000	1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25,360,000	76,080,000	
			10	3~4층	10	68,437,840	193,162,160	261,600,000	10,000,000	16,160,000	26,160,000	26,160,000	26,160,000	26,160,000	26,160,000	26,160,000	78,480,000	
			76	5층~20층	76	68,437,840	201,362,160	269,800,000	10,000,000	1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80,940,000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이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 공통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일반공급 호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 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어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청약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를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제13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 총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 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
- 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거주자	기타 광역시 거주자	기타 시·군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별표 1의2[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함

※ 특별공급의 추천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천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해양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청약 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로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59.9365	74.9314A	74.9912B	74.9577C	84.9370A	84.9412B	소 계
일반 특별공급	15	16	7	5	23	9	75
다자녀 특별공급	15	16	7	5	23	9	75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16	7	5	23	9	7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4	2	1	6	2	19
합 계	49	52	23	16	75	29	244

■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 등)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대상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대상세대 : 총 75세대

(단위: ㎡ / 세대)

구 분	59.9365	74.9314A	74.9912B	74.9577C	84.9370A	84.9412B	소 계
일반 특별공급	15	16	7	5	23	9	75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2013년 5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수가 기존 건설량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변경됨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 19세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대상세대 : 총 75세대

구 분	59.9365	74.9314A	74.9912B	74.9577C	84.9370A	84.9412B	소 계
다자녀 특별공급	15	16	7	5	23	9	75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3)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국토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 저축 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하여야 함.

※ **201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557,724원 이하	5,102,802원 이하	5,357,44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469,269원 이하	6,123,362원 이하	6,428,935원 이하

- * 2010년부터는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6인 이상 가구’ 도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 중인 태아 수를 포함)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

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대상세대 : 총 75세대

(단위: m²/ 세대)

구 분	59.9365	74.9314A	74.9912B	74.9577C	84.9370A	84.9412B	소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16	7	5	23	9	75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전체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0.2.23) 이전에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봄 - 특별공급신청불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상세대 : 총 19세대

(단위: m²/ 세대)

구 분	59.9365	74.9314A	74.9912B	74.9577C	84.9370A	84.9412B	소 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4	2	1	6	2	19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3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APT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거주자	기타 광역시 거주자	기타 시·군 지역(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2013.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1주택자 이상 세대도 1순위 가점제 적용 대상이나 2주택 이상시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감점 적용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 적용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됩니다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 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 한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접수대상 없음
	3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추첨제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2)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4)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5)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6)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 청약이 제한됨.
-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적용 우선공급하고,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함.(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4.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5.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민영주택 청약 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자 신청요건

-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 가능(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만 신청 가능)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한 주택규모(전용면적)를 선택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1순위 청약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선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365	74.9314A	74.9912B	74.9577C	84.9370A	84.9412B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59	74A	74B	74C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 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됩니다.)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합니다.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정제 청약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정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정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 일반공급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 불가함(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 접속(www.aprt2you.com) → 인터넷 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입력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p>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p>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감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신청시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은행창구 신청시 : 해당지역 소재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4. 11. 17(월)]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인터넷 신청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은행창구 신청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김해시 / 경상남도	• 2014. 11. 05(수)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신장유 일동미라주 더파크 견본주택 : 김해시 대청동 305-1번지
일반공급	1순위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2014. 11. 06(목) 08:00~17:30	•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2you.com)
	3순위		• 2014. 11. 07(금) 08:00~17:30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신청자격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특별공급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이혼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2you.com에서 발급) 단, 특별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일반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배정기준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입양 입증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 가족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본인 발급 기준) • 임신증명서류(자녀를 임신한 경우)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입증서류 및 이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미등재된 경우) •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상기 소득입증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4. 11. 05(수)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4. 11. 14(금)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4. 11. 19(수) ~ 2014. 11. 21(금) (3일간,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4. 11. 14(금)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www.신장유일동미라주.kr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및 당첨자 발표신문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APT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4년11월14(금)~2014년11월23일(일)(10일간)	
전화 /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4년11월14(금)~2014년11월23일(일)(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4년11월14일(금)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 현재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합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2일이내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V

계약체결

■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 비 서 류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노부모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계약조건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2.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 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3.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4.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5.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6.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7.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8.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함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10.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1.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2.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14.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5.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16. 특별공급 및 일반 1, 3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1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함.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17.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미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임.
18. 당첨자는 상기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계약시는 별도 통지 없이 계약포기로 처리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19.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계좌	부산은행	101-2017-3107-09	극동유리건설부문(주) 이동관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는 입주지정 최초개시일 전일 분까지 당사에서 부담함.(당사가 주선한 중도금 무이자대출에 한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3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7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은 날씨, 민원, 신공법적용으로 2017년07월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하며 분양계약자는 앞당겨지는 입주예정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주민 운동시설(베드민턴장 2), 주민공동시설1, 작은 도서관1, 어린이집1, 경비실3, 노인정1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 부가세포함)

구분	59.9365	74.9314A	74.9912B	74.9577C	84.9370A	84.9412B
발코니확장공사비	6,600,000	7,150,000	7,150,000	7,150,000	7,590,000	7,590,000

(2)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 공사비(전 타입 공통)	부산은행	101-2020-1843-07	극동유리건설부문 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3)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하여야 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구조변경 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시공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사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의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들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① 가구 및 기타	가구류 일체(신발장, 드레스룸장, 주방 펜트리장, 시스템 가구, 작은방 붙박이장, 주방 다용도 펜트리장 등), 수전류(세탁실)	설비배관
② 바닥재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배관,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천장	벽지(벽지초배지포함), 벽마감일체(타일등), 아트월(타일,판넬,도장 등 일체포함), 천정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정 포함), 반자동림(몰딩 포함), 벽 및 천정도장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 콘크리트면 바탕정리, 발코니벽도장, GAS배관 천정을 위 석고보드, 소방시설
④ 창 호	목창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일체) 및 욕실문, 창호철물일체(도어록,경첩 포함), 디지털도어록	각실 내부 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및 소방관련 방화문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정재(천정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헨, 욕실타일, 욕실선반, 욕실 인테리어 젤다이 및 상 판, 스위치, 콘센트, 거울 등 마감일체	방수(바닥, 벽체), 전기설비 배관 배선
⑥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가스쿡탑), 가구(상판 및 악세사리 포함), 가구(상판 및 악세사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TV	설비배관(급수 난방 등 매립배관 및 가스배관), 후드, 주방배기덕트, 소방경사 관련시설
⑦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직부등, 센서등 일체)	배관배선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기본형건축비			마이너스옵션 내역(15%)	비고
	공급면적	적용건축비	금액		
59형	80.0013	1,408,000	112,641,000	16,896,000	11~20층 이하
59형	80.0013	1,494,000	119,521,000	17,928,000	6~10층 이하
74A형	99.5256	1,407,000	140,032,000	21,004,000	11~20층 이하
74B형	100.6710	1,407,000	141,644,000	21,246,000	11~20층 이하
74C형	99.1871	1,407,000	139,556,000	20,933,000	11~20층 이하
84A형	112.2969	1,407,000	158,001,000	23,700,000	11~20층 이하
84B형	112.9168	1,407,000	158,873,000	23,830,000	11~20층 이하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체결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신청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시스템에어컨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이미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동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VII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6)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2012.12 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 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을 본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가정항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가정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정제의 가정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음.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전용면적 85㎡ 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최초 선택일(직전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단지 내부여건

- 단지의 명칭, 동표시, 동번호, 그래픽, 조경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자문)에 따라 입주시 실제내용이 공급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축벽, 발코니외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축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접해있는 건물로 인하여 인접 동 세대는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1층,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동선 계획되어 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 단지내 주차장은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건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준공도면에 반영됨)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단위 세대 계약자의 동의하에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시 견본주택과 상이하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채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과 창호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세대에 별도 구획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채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분양카탈로그 및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하부 운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운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욕실장 뒷면은 타일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신발장 및 붙박이장 배면은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가구, 붙박이장 하부에는 마루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임을 인지하고 본 공사시 인허가된 설계도면에 기준하여 시공함.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에어컨 견본주택 자체의 냉방설비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 또는 확장비에 포함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공사시 업체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식탁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은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할인 안내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시에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중도금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고지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주변 도로 여건, 인근 건물신축계획 등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가 가능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귀속하고, 별도의 구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택지지구의 경우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또는 유해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14년 04월 21일 승인(2014년 10월 22일 변경)된 사업승인(변경)도면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입주민의 집단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 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축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본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 또는 확장비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실제 또는 제품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부벽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식재, 색상, 각종 시설물, 인근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계획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닙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통 또는 확장 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 사업승인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령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사업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인쇄 제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조경컷,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 또는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 및 계약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견본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공간 및 옥외 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색채 및 조경자문, 현장여건, 입면차별화 등에 따라 옥탑, 지붕, 축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부대시설입면, 지하주차장 벽면 등의 디자인 및 색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선택품목의 경우 당해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가격이 책정될 수 있으니 별도의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근린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와 옹벽 사이의 거리를 계약서 작성 전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아파트 모형은 경관심의를 득하기 전에 제작하여 당 아파트의 대략적 안내를 위한 것으로 실제 경관심의 완료 후 아파트 외부 색채 및 단지외부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아파트 모형의 아파트 배면에 표현된 미개설 35m 계획도로는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장유온천 ~2호 광장간 도시계획도로(대1-3호선)로 사업주체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미개설 35m 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앞 15m도로는 당 아파트사업에 따른 계획도로로써 사업주체가 개설 할 예정이며 당 아파트 사업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 아파트 학생수용 및 학교배정은 해당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입주시 적절하게 배정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는 개별난방설비가 적용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 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단위세대 외)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명 이 에프 씨	㈜ 한국나이스기술단
감리금액	₩1,341,346,600	₩424,068,000	₩154,000,000

▣ 택지비 및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 대한감정평가법인	₩45,622,510,700
㈜ 대화감정평가법인	₩46,321,002,000

※ 대지면적 36,762.7㎡ 기준(주택이 건설되는 부지로서 사업계획승인서상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2312014-101-0003800	132,363,77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 행 사	시 공 사
상 호	주식회사 극동유리 건설부문	주식회사 일동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568(어방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2005호 (우동, 센텀그린타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07-81-05616	604-81-30998
주 택 건 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경남-주택2011-0077	부산-주택1983-0004

▣ 입주예정일 : 본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2017년 07월 예정입니다.

▣ 분양홈페이지 : <http://www.신장유일동미라주.kr>

▣ 견본주택 위치 : 김해시 대청동 305-1번지

▣ 분양문의 : ☎ 055-333-0098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